

계 약 서

신 청 일 2017 년 5 월 12일

신 청 인 **윤희정**

이민분류 초청이민(배우자)



한누리이주(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10, 3M타워 1119호 (우) 06235
#1119, 10, Teheran-ro 20-gil, Gangnam-gu, Seoul, Korea
Tel : (02) 525-0068 / Fax : 02-6280-6197 / www.hannuri.com

한누리이주(주) (이하 “회사”)는 신청인 윤효정 (이하 ”고객”)에게 미국초청이민 (배우자) 수속대행 및 절차 전반에 관한 아래의 계약 내용을 합의한다.

제 1조 [목적]

“회사”와 “고객”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각각의 의무를 다하여 이민비자 관련 수속 및 절차를 원활히 이행한다.

제 2조 [“고객”의 의무]

1. 이민비자 신청 및 수속 절차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2. 수속진행에 따른 수수료 및 수속 경비의 성실한 납부
3. 건강상의 문제나 범법사실, 기타 결격사유 등을 “회사”에게 고지
4. 비자 발급 시까지 변동 없는 현 생활유지 (직장, 재산, 사업, 학업, 거주지 등)

제 3조 [“회사”의 의무]

1. 이민비자를 위한 상담 및 자격판정
2. ”고객”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한 서류 안내
3. “고객”의 비자 서류 작성 및 미국이민국 또는 대사관 서류 접수

제 4조 [수속비 및 기타비용]

1. 고객”은 이민비자 신청 수속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속비를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본 계약서의 기본 서비스 금액은 ₩1,300,000이다.

2. 별도 표시된 미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비용 등은 “고객”부담이며, 미대사관또는 이민국에 지불이 되는 비용 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된 금액의 차이는 ”고객”의 부담이다.

기타 (별도 비용)	I-130 Filing fee Affidavit of support NVC visa fee 신체검진비 영주권 발급비 Immigration fee	\$535 \$120 \$325/1인 어른 : 278,350원~370,000원 15세미만 :130,000-232,250원 \$220/1인
할인 금액 적용	₩1,300,000 (부가세포함)	계약시

3. 신청자에 신상에 관한 기본 서류 및 대부분의 번역은 서비스 내용에 포함이 되나 재정에 관

한 서류, 기술적 또는 전문번역이 필요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고객”은 따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 5조 [환불규정]

1. “고객”의 자의에 의하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속이 중단 포기하거나 출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예: 연락두절, 필수 수속서류 미 제출, 신원조회 부적격, 신체검사 불합격 등)에 “회사”는 환불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고객”이 수속 서류를 허위 기재하였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환불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한 이민비자 거절이 생겼을 경우 환불 대한 쌍방 합의 후 10 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4. 모든 비자의 발급 기준은 미국 이민국과 미대사관의 재량과, 신청자 자격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기에 비자 신청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제 6조 [면책]

“회사”는 “고객”이 비자를 취득하기 전 임의로 처분한 재산 및 휴직, 퇴직, 폐업 등으로 인한 손 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 7조 [통지의 의무]

양 당사자는 변경된 사항을 통상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는 귀책 사유가 있 는 당사자가 책임진다

제 8조 [기타]

1. “고객”이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서 상의 수속업무를 개시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수속업무가 진행 중일 경우 그 진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 한 “고객”의 불이익이나 금전 상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 받은 정보를 이민비자 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고객”은 미국 비자 신청 및 처리가 미국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4. “회사”는 “고객”의 비자 거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정신적 손실 및 피해 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사”는 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본 계약서는 위 신청 서비 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6.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한 분쟁은 현행 상법에 따른다.
7. 본 계약의 내용은 “고객”과 “회사”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본 계약서는 “고객”과 “회사”의 쌍방합의로 작성되었으며, 본 계약의 서명은 팩스, 이메일로 받을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서는 “고객”과 “회사” 쌍방의 대표가 서명 날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고객”이 이민비자를 취득할 때까지 성실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민비자 취득 시 본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날짜: 2017년 1월 1일

“고객”

성명: (서명/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이 메 일:

“회사”

회 사 명 : 한누리이주(주)

연 락 처 : 02-525-0068

이 메 일 : hannuri@han-nuri.com

대표이사 : 김승배 (서명/인)

(서명/인)

입금은행 : KEB하나은행 115-910030-83804

한누리이주(주)

한누리이주㈜는 고객 보장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3억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외교부에 정식 등록이 되어있는 17년 경험의 비자/이민 전문 대행 업체입니다.

외교부 · 서울보증보험 등록

